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 개정이유

주 5일 근무제의 확대시행과 더불어 수상레저활동의 대중화로 수상레저기구와 수상레저활동자는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어, 개인소유 및 모든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등록 및 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상레저기구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시행일자 : 2006. 4. 1

◇ 주요내용

가.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의 조종금지(법 제23조)

수상레저활동자는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의 영향,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것을 금지함.

나.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안전검사제도 도입(법 제30조 및 제37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시에 신규검사를, 등록 후 5년마다 정기검사를, 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는 임시검사를 각각 받도록 함.

다. 보험가입 의무(법 제34조)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

라. 수상레저기구의 형식승인(법 제47조)

수상레저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 해양경찰청장의 형식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수상레저기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정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당해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는 신규검사를 생략하도록 함.

